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3949 |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위성곤 · 정준호 · 김기표  
강준현 · 박정현 · 이학영  
임호선 · 박희승 · 박균택  
안호영 의원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임이나 난임을 치료하기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에 해당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징계 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하며,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함.

그런데 불임 또는 난임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적 장애로 보기는 어려워 공무원이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휴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징계시효 기간을 늘려야 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불임이나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늘리며, 육  
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난임휴직 절차를 합리화하고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  
고자 함(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의”를 “제4호 및 제4호의 2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4호에”를 “제2항제4호 · 제4호의2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4호에”를 “제2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에”로 한다.

4의2. 불임 ·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때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에”를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에”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 ·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호”를 “제4호의2 · 제5호”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부 칙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71조(휴직) ① (생략)                                                                                                    | 제71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
|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u>제4호의</u>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② -----<br>-----<br>-----<br>----- <u>제4호 및</u><br><u>제4호의2의</u> -----<br>-----<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u>8세</u> 이하 또는 초등학교 <u>2학년</u>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4. <u>12세</u> ----- <u>6</u><br><u>학년</u> -----<br>-----<br>-----<br>--                   |
| <u>&lt;신 설&gt;</u>                                                                                                 | <u>4의2. 불임 · 난임으로 장기간</u><br><u>치료가 필요한 때</u>                                             |
| 5. ~ 7. (생략)                                                                                                       | 5. ~ 7. (현행과 같음)                                                                          |
|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 제3호 및 <u>제2항제4호에</u>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 ③ -----<br>----- <u>제2항제4</u><br><u>호 · 제4호의2에</u> -----<br>-----.                        |
| ④ 임용권자는 <u>제2항제4호에</u>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                                                                            | ④ ----- <u>제2항제4호</u> 또<br><u>는 제4호의2에</u> -----                                          |

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나. (생 략)

2. ~ 10. (생 략)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  
-----.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휴직 기간) -----  
-----.

1.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에-----

-----  
-----  
-----.

-----  
-----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2. ~ 10.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

-----  
---제2항제4호·제4호의2,-----  
-----  
-----.

② -----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③ · ④ (생략)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 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 라. (생략)

<신설>

<신설>

2.·3. (생략)

-----  
-----제4호의2  
· 제5호-----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  
-----  
-----  
-----  
-----.

1.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2.·3. (현행과 같음)

|             |                |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